대외비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2016. 3. 7.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개최 예고

- [일시] 2016. 3. 19. (토) 14:3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
- [발표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 교수
- [주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 발표자 '강○○ 교수' 프로필

▶ **[경력]** 現 ○○대 로스쿨 교수 (1965년생)

▶ **[학력]** 서울대 법학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관심분야]** **비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 **[주요 활동]**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입법**에 대해 **批判的 입장 견지**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 중

- **2015. 10. 14. 국회 환노위 소속 野黨 의원**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이란 주제로 주최한 **노동법 3개 학회 공동토론회**(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로 발표
- **2015. 12. 10.** 한국노동법학회 발간 학회지인 노동법학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근로시간, 해고, 취업규칙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발표
- **2015. 12. 22. 국회 환노위**가 개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野黨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노동법 5대 법안의 검토'**에 관한 의견 진술

<은수미 의원이 트위터에서 소개한 강○○ 교수의 국회 환노위 공청회 발언 내역>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ollow

강성태교수, "정부의 근로시간지침은 황당하다. 이 지침은 주44시간일때 최대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그런데 주40시간이되자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4시간 더 늘려" 지침통치로 장시간 근로1위, 독일보다 4개월 더일하는 나라로 만든 정부 #은수미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ollow

강성태교수, "정부여당 비정규직법은 법률이라 고보기 민망할정도로 시행령이많다"(노동법공청회)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과 지침독재죠. 국민보기에 민망하지만 재벌보기엔 당연할터이고 경총은 이조차도 부족하다고. 재벌독재를 완성할모양 #은수미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Follow

강성태교수, "현행법은 기간제로 2년하고 하루지나 더일하면 무조건 정규직. 그런데 정부여당법은 4년 하루가될경우 현행법과 달리 무조건 정규직조항없애고 이직수당 주고 해고시키는법, 합리적사유있으면 그조차 안줘. 법적후퇴" #은수미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 ⇨ 회원들에게 위 세미나 안내 및 홍보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를 홍보하면서 참석을 권유
- 2016. 3. 6. 15:00 현재 **총 16개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댓글은 주로 **대외협력팀의 출범을 축하**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

☑ 이○○ 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글

1. **대외협력팀**은 **종전의 '국제협력팀'**과 **'기획팀 중 대외협력' 부분**을 합하여 새로이 구성된 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의 관심과 교류 요청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응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된 활동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국내외 국제인권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상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및 강화(외부에 연구회를, 외부 단체 및 행사를 연구회에, 쌍방향으로 소개함)**
   2) 연구회 국제화연수 주관 및 지원
   3) 연구회 주최 국제행사 지원

   현재 팀원은 저 포함 5명으로, 새로 생긴 팀인 만큼 젊고 활기차게 활동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팀 활동에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 오늘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지침' 세미나**를 안내 드립니다.

   (중략) **현안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의 주제 발표가 예상**됩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참석인원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2016. 3. 4. (금)까지 댓글, 메일,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2. 예상되는 문제점들

가.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

▣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與野간 첨예한 대립**

●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

- 정부, 여당은 2월 임시회 종료일(3. 10.)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는 4월 총선 전 처리는 힘든 상태 ⇨ 주요 정치 쟁점으로 지속

▣ **첨예한 정치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우려됨**

●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이 공개세미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비공개세미나일 것으로 추정됨

● 비공개세미나이더라도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질 危險性은 상존

-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성향 언론의 기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사의 사법부 및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임

- 특히, ①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 ② 법원 내 공식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위 세미나를 소개,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였다거나, ▲그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우려가 존재함

☑ [예상 가능한 보수 언론의 비판]
1 정치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소속 판사들을 **징계**하라.
2 왜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 [참고]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세미나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2009. 10. 10.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음

- 발표: 최○○ 부장판사 (현 변호사)
- 주제: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 지정토론: 김○○ 부장판사(○○기), 이○○ 판사(○○기)
- 장소: 서울고등법원 회의실

● 당시에는 공개세미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였음 ⇨ 세미나 내용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발표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음

☑ **파업 (김○○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9. 10. 13.자 칼럼)**

▶**"파업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10일 마련한 공개세미나**에서 **인천지법 최○○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그는 '노동사건 심리(審理)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해석은 1800년대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인식과 역사의식의 퇴영적인 발로"라고 주장**했다. (중략) 토론자로 나선 이○○ ○○지법 판사는 "발표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업이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도 노조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에서 작년과 올해 일어난 34건의 분규 중 33건이 강성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났다. **폭력까지 동원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판이다. 법관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 초빙한 세미나 개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됨**

● 세미나 발표자인 강○○ 교수는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5. 12. 22.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골고루 초청**한 것과 **비교**됨

- **[여당 추천 진술인]** ① 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② 권○○ ○○대 교수, ③ 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④ 윤○○ KDI 연구부장

- **[야당 추천 진술인]** ①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③ 정○○ 한국노총 본부장, ④ 이○○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 **逆으로, 與黨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이○○ 경영자총협회 상무, 권○○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만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성향 언론**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임

☑ **법관윤리강령**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경향신문**은 **2016. 2. 15.자 기사**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비판**한 바 있음

☑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 부르려 한 판사 대법의 입으로"(경향신문 2016. 2. 15.)

▶**법관연수에 청와대 인사를 동원하려다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판사가 대법원을 대표해 발언하는 공보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조○○ 재판연구관을 대법원 공보관에 임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법관연수 기획교수이던 2010년 6월,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청와대 행정관 ㄱ씨를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토록 했다. 당시 연수 대상 법관들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 강의가 있는 날의 연수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취재가 시작되자 사법연수원 측은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한 판사를 색출했으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이 법원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며, **"법관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할 셈이냐"는 질타**에 박○○ 법원행정처장이 별달리 해명하지 못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로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발표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쟁점 사항**에 관하여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행위 ⇨ **"법관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 또는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권고의견 제5호 위반** 가능성 높음

-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향후 해당 법관이 맡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2010. 3. 15.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3조, 제7조).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직무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와 **외관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사법의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가. 가능한 견해들

▣ [1안]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不許

● [장점①]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등 **관련 규정 및 원칙에 충실**

- **(내규)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 상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법관들로만 구성된 연구모임이더라도 **법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 연구모임**이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민사판례연구회 등과 같은 법원 외부 학술단체**도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우리법연구회의 서울법원청사 내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 가부** ⇨ 不可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세미나실,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

- 서울고등법원 청사관리내규(이하 '내규')

▶내규에 의하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관리권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유하나, **일부 시설(예를 들어, 동관 4층 중회의실) 관리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임**되어 있음

▶내규 제5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연구 모임의 회의실 사용은 **① 연구모임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법원직원**이어야 하고, **②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정적 지원하는 연구모임**이어야 함 ☞ **①, ②는 "AND" 조건**임

▶우리법연구회는 **① 법관들로만 구성된 학술모임(2005년경 변호사들은 모두 탈회)**이지만, **② 법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의 연구모임**임 ⇨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세미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장점②]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 감소**

-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 개최 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 알려지더라도, **법원청**

사 외부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행사이므로, 최소한 **대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묵인, 방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음

● [장점③]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시그널**

-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의 前, 現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관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전, 현 회원들**이 **대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경향 존재

▶**노동법연구회**의 경우 그 주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가입이 저조**함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① 주제의 보편성('국제', '인권'), ② 연구회 내부 조직 문화의 참신성**(법관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편안한 조직 문화라고 함)으로 인하여 **젊은 법관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 존재

-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사용 不許 ⇨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의 모임을 할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음

● [단점] **법관 사회의 여론이 매우 악화될 우려 존재**

- 우리법연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 사용**해 왔음

  ▪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① 20층 세미나실, ② 동관 14층 소회의실, ③ 동관 4층 중회의실** 등을 사용

- 회의실 사용 불허의 이유로 **내규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더라도 우리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간섭 내지는 탄압**으로 받아들일 소지 다분

☞ 우리법연구회가 회의실 사용 불허 처분을 공론화시킬 우려 존재

-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계속 사용해 오던 회의실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우려가 큼 ☞ 내규를 엄밀하게 따지기 보다는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 법원 내 회의실도 이용하지 못하는가'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다수의 일반 판사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임**

- 만일 **세미나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회의실 사용을 불허했다고 알려질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정당한 학문 연구 활동' 내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큼

▣ [2안] 무대응 ⇨ 서울법원종합청사 회의실 사용 허가 및 방관

● [장점] 법관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논거는 [1안]의 단점 부분과 동일

● [단점] 세미나 개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이 커짐

▣ [3안] 법원 내 회의실 사용 등에 대한 의견 간접 전달

● [장점] 우리법연구회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법관(예: 윤○○ 부장판사, 최○○ 심의관)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임원진(회장: ○○기 문○○ 부장판사, 간사: ○○기 박○○ 판사)에게 이번 세미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보수 언론 등의 逆風**을 맞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세미나는 법원 외의 장소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 ☞ **우리법연구회의 심리적 저항감 감소**

● [단점①]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이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의실 사용 불허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음 ☞ 우리법연구회 임원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법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간접적 의견 전달을 통하여 **법원행정처가 우리법**

연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됨

- 실제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 부장판사가 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단점②] 비록 간접적인 의견 전달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동안의 오랜 관행과 달리 법원 외의 장소에서 세미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영진이 심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됨

나. 검토의견 ⇨ [2안]과 [3안]의 절충안 "회의실 사용 허가 + 우려 전달"

▣ 회의실 사용 불허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수의 일반 법관들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 존재 ⇨ 3월에 집중되어 있는 판사회의, 상반기에 출범할 사법행정위원회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이 판사회의 개최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 존재

● 회의실 사용 불허가 여부는 판사회의 구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이 완료된 뒤인 2016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

▣ 신임 법원행정처장님께 부담이 될 우려 존재

● 처장님 취임 초기에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그룹은 이번 조치를 신임 처장님 취임에 따른 정책 기조 변경(예: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인식할 가능성 존재

▣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 크지 않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한 대응 가능

●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 개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

는 한 세미나 발표 내용 및 토론 결과가 보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아래와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 대응 가능

- ① **법관 윤리**와 **법관의 학문 연구 활동**의 **한계**에 대한 **입장 발표**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구체화
- ②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모임의 **법원 청사 내 회의실, 세미나실 사용 금지**

▣ [2안]에 대한 보완 조치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진심 어린 우려 전달**

● [필요성]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의 이번 세미나가 갖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는 있음 ☞ **법관윤리**에 관한 대법원 등의 **감독 조치**의 일환

● [구체적인 방법]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간사인 박○○ 판사(○○기)를 불러서, 아래와 같은 진심 어린 우려를 전달

>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전달할 사항**
>
> ▶**[공감, 격려]**
>
> - 원래 내규상으로는 회의실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의 세미나인 점을 고려**하여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였음
>
> ▶**[진심 어린 우려]**
>
> -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세미나 주제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한 것임
> -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당, 야당 추천 진술인을 골고루 초청**하였음
> -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인 **강○○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진술인**으로 의견을 밝힌 분으로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만**을 불러서 세미나를 할 경우 **언론에서는 우리법연**

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큼

-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최근 2. 15.자 기사에서, **사법연수원**이 지난 2010년 법관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기려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따라서 우리법연구회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을 골고루 초청**하여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음**

<끝>